

[별표 4] <개정 2008.8.20>

축산물의 검사기준(제12조관련)

1. 삭제 <2004.8.4>

2. 원유의 검사

가. 검사구분

원유위생검사 및 시설위생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검사요령

(1) 원유위생검사

(가) 집유전 검사

관능검사·비중검사·알콜검사(또는 pH검사) 및 진애검사는 다목의 검사기준에 따라 집유전에 실시한다. 다만, 진애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실험실검사

적정산도시험·세균수시험·체세포수시험·세균발육억제물질검사·성분검사 및 기타검사는 시험항목별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세균수시험 및 체세포수시험은 각각 농가별로 15일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새로 원유를 납유하는 농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유가축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가축으로부터 착유한 원유를 납유한 농가 기타 실험실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원유를 납유한 농가의 원유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 농가에서의 집유시 원유의 냉각온도는 5℃ 이하이어야 한다.

(2) 시설위생검사

집유전후 각 1회 이상 실시한다.

다. 검사기준

(1) 일반기준

(가) 중화·살균·균증식억제 및 보관을 위한 약제가 첨가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우유와 양유는 동일 작업시설에서 수유하여서는 아니되고 혼입하여서도 아니된다.

(2) 품목별 기준

(가) 우유(착유된 그대로의 것)

1) 세균수 및 체세포수 :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에 의한다.

2) 비중 : 15℃에서 1.028 내지 1.034

3) 산도 : 홀스타인종우유 0.18% 이하, 기타품종우유 0.20% 이하

4) 알콜시험 : 적합

5) 진애검사 : 2.0mg 이하

6) 관능검사 : 적합

7) 가수검사 및 가염검사 :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다.

(나) 양유(착유된 그대로의 것)

1) 세균수(표준한천평판배양법) : 1ml당 50만 이하

2) 비중: 15℃에서 1.028 내지 1.034

3) 산도: 0.2% 이하

라. 시험방법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3. 식용란의 검사

가. 식용란의 표면은 분변·혈액·난내용물·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식용란은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아야 한다.

다. 식용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중 알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가공·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4. 가공품의 검사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에 대한 검사항목·방법·기준 등에 대하여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다.

5.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의할 수 있다.